




요약문



1. 조사개요 • 3

2. 국가별 주요 진입장벽 • 4

- 미 국 • 4
- 일 본 • 6
- 중 국 • 10
- 러 시 아 • 12
- 대 만 • 14
- 태 국 • 15
- 싱가포르 • 18
- 필 리 핀 • 20
- 베 트 남 • 22
- E U • 23

1. 조사개요

조사목적

- 주요 한국 수출대상국의 시장진입 장벽과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수출 업체의 시행착오 방지 및 원활한 수출추진 지원

조사대상국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EU

주요 조사내용

- 진입장벽 특징
- 유형별 주요 진입장벽
- 진입장벽 피해 사례
 - 통관시 억류사례 및 비관세장벽에 의한 통관 지연사례
 - 관련 법률 및 규정. 이의 적용현황 및 피해사례 (타국 사례 포함)
- 진입장벽의 파급효과 및 영향
- 해소방안 및 향후 전망

2. 국가별 주요 진입장벽

미 국

- 미국의 농식품 수입규모는 2007년도 1,014억 달러로 매력적인 시장이나, 9.11테러 이후에 수입식품 테러방지를 위해 바이오 테러방지법, 최근의 식품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종 관련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 미국시장 진출에 애로 요인으로 부각됨
 - '08년 4월 “살모넬라 파동”의 원인으로 수입 토마토가 의심을 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FDA가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멕시코산 하리피뇨와 세라노 고추가 주범으로 확인되어 원산지 표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표시대상이 육류·야채·과실류로 확대, 소비자 보호법 강화
 - 최근의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 및 수입품의 통관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수입업체의 의견임
 - 위험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벌금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린 최고 1,500만 달러로 정하고,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미국으로 농식품 수출시 관문인 통관 업무는 9.11테러 이후 미 농무부 (USDA)의 검사업무를 통합하여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로 확장 개편됨
 - 그 기능 중 신속한 무역거래 통관관리 업무보다는 수입품목에 의한 테러 방지를 위한 Security 업무가 70%이상 차지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통관 지연 등으로 수출에 애로사항 발생

- 또한, 미 농무부(USDA)는 수입시 전입될 수 있는 병충해로부터 자국의 식물자원 보호, FDA 위해식품으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업무가 강화됨
- 이러한 통관 및 검사관련 연방정부 기관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수입물품을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해 위반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검사를 집중 강화하는 표적 검사를 채택하고 있음
 - 일종의 수입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FIARS(FDA Import Alert Retrieval System)을 통해 수입통관시 계속 되는 위반사례가 있는 품목, 나라, 제조회사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통관관련 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이들 제조사 및 제품에 대한 수입시 엄격한 수입검사 실시
 - Import Alert list에 포함되면 당해 수출업자가 그 품목을 수출시 샘플 조사 없이 자동적으로 억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조치가 내려져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가 됨
 - 따라서, 한국산 농식품의 FDA 억류사례 및 FIARS의 Import Alert list의 유형 및 품목별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품목별 대미 수입 통관시 유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통관 거부 및 지연으로 인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가 필요함

일 본

가.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주요 진입장벽

- 현재 한국산 식품에 대한 일본에서의 진입장벽은 크게 수입할당(IQ)제도와 엄격한 식품검사(2006년 5월 29일에 시행된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등) 그리고 의무사항은 아니나 지도사항으로 안정성확보를 위해 수입자에게 가이드 라인을 책정(2008년 6월 5일 공표된 수입가공식품의 자주관리에 관한 지침)하여 간접적으로 수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2008년 7월말 현재 일본의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한국산 식품건수는 총 26건으로 이중에서 수산물이 13건, 신선농산물의 잔류농약이 11건, 라면, 건강식품 2건으로 나타났음. 이중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금년 6월 30일부로 잔류농약기준이 완화된 테부코나졸 위반건수 6건을 제외하면 신선농산물은 5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엄격한 일본의 검역 상황 속에서 한국산 식품은 타국에 비해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수산물은 위반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나. 수출시 유의사항

1)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 일본은 '06. 5월에 PLS(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 758개 농약 등의 식품잔류 허용한도(잠정기준)를 고시로 설정하고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식품잔류 허용기준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국의 각 수출업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위반되어 명령검사를 받게 되면 수입업체가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선도문제 등 타격이 큼. 또한 타 수출 업체에도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함

2) 수입 가공식품의 자주관리에 관한 지침

- ('08년 6월에 전국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수입업체의 요구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수출업체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출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강구해나가야 할 것임)

가) 취지

- 유독, 유해물질 등 혼입방지와 더불어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에서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공식품에 관한 기본적 지도사항을 한층 구체화하고 수입가공식품의 자주위생관리를 추진하여 안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

- 해외의 제조자와 직접 계약하여 대일 수출제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수입자 외에 가공식품의 수입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외 제조자와 직접적인 제조 위탁계약 관계에 없는 수입자라도 수출국 측의 수출업자 등을 통해서 본 지침에 따른 사항을 제조자에게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다) 확인체제

- 수입자는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이 있는 책임자 및 담당자를 두고 본 지침에 따른 사항의 확인을 실시한다.

라) 확인사항

- 수입자는 수출국의 식품위생관련 규제의 정비 및 실시상황, 제조자의 위생관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수입하려 하는 가공식품의 제조자에 대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문서 확인 외에 현지조사, 주재원의 설치, 시험검사 실시에 의해 확인을 한다.

(1) 수입개시 전

- 수출국의 법 규제를 준수
- 제조시설의 시설설비 수준이 일본 국내기준과의 동등성
-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이 일본 국내기준과의 동등성, HACCP 도입을 권장

(2) 원재료의 매입 단계

- 납입로트(lot)마다의 규격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 정기적인 시험검사에 의한 확인
- 이물혼입이 밝혀진 원재료의 매입정지
- 수출국 행정기관 또는 일본 국내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실시
- 원재료마다의 적절한 로트관리

(3) 제품의 제조·가공단계

- 위생관리체제의 정비·유독, 유해물질의 혼입방지대책의 철저
-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의 설치
- 정기적 시험검사에 의한 최종제품의 규격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 제품마다의 적절한 로트관리

(4) 제품의 보관·운반·유통단계

- 제품의 보관, 운반 및 유통 시에 위생확보·유독, 유해물질의 혼입 방지 대책 철저

마) 회수·폐기

(1) 회수수순의 책정

- 수입자는 수입식품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에 대한 건강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문제제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에 관련된 책임체제, 구체적인 회수방법, 관계 행정기관에의 보고 등 수순을 정할 것

(2) 폐기조치

- 수입자는 회수된 제품에 대한 폐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할 것. 또한 회수제품은 일반제품과 명확하게 구별하여 보관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적절하게 폐기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3) 공표

- 수입자는 회수 등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소비자への 주의 환기 등을 위해 해당 회수 등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대해 고려할 것

바) 기타

- (1) 일본의 식품위생 규제의 교육 등 : 수입자는 제조자를 대상으로 일본의 식품위생규제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
- (2) 적정표시 : 수입자는 수입식품의 표시내용이 일본 국내의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 (3) 기록의 작성 및 보존 : 수입시의 기록, 판매시의 기록 등의 적정한 작성 및 보존에 노력할 것
- (4) 시험검사 : 수입자는 시험검사의 정확성 및 정도 등에 대한 신뢰성 확인할 것

중 국

가. 진입장벽의 특징

- 중국은 채유종실, 면화 등 일부 기초 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의 주된 수입국이기도 하지만 농산물 수출대국으로 농산물에 대한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인삼의 경우 자국 인삼산업 보호를 위해 복잡한 등록제도, 규제, 과도한 샘플링 등을 통해 한국 수출업체의 수출의욕 사전 차단
 - 수입약재관리방법, 수입보건품등록제도, 수입약재샘플검사규정
- 주류의 경우 자국 주류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로 자국 주류산업 보호, 가공식품의 경우 17% 수준인 높은 증치세(부가가치세) 유지

나. 주요 진입장벽 유형

- 중국 농업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진입장벽
 - 종자법 : 수입종자의 판매 제한
 - 수입약재관리방법 : 수입홍삼에 대한 사전 수입 허가
 - 수입약재샘플규정 : 수입홍삼에 대한 과도한 샘플검사로 검역비용 과다 및 수입원가 상승
 - 수입보건품등록제도 : 제품 등록에 수천만원의 등록비용 발생
- 통관, 검역 등 운영상의 문제점
 - 검역, 통관 시 규정에 없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낮은 관세 적용, 통관의 간소화 등을 미끼로 역류 또는 금품 요구

- 제품특성에 대한 중국 내 제도 미비에 따른 문제점
 - 중국에서 김치는 절임류로 분류(GB2714-2003/장절임류위생표준)되어 검역을 받아야 하나 절임류의 경우 미생물 기준치(대장균군)가 100g당 30마리 이내(벌크포장의 경우 90마리 이내)로 발효식품인 김치의 특성상 엄격한 적용 시 통관이 거의 불가능함

다. 수출 시 유의사항

-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 ‘수입식품, 화장품 라벨 사전심사’ 제도,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허가관리(수입허가증 발급)’ 등을 폐지하는 등 통관전반에 있어 간소화가 진행되었음
 -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상해, 천진 등 일부 항구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요구가 없어지고 정식통관이 자리를 잡고 있음
 - 처음 중국시장을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중국은 의례 정식통관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정식통관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 일부 세관의 경우 상품검사 시 구체적인 검사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균, 농약 등에 대한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에 응하기 보다는 관련 법조항, 기준 제시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 정식통관을 시작하면 오히려 통관이 쉬워지므로 이러한 관행을 거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수출업체들의 의견이 다수 있음
- 바이어가 첫 거래부터 지나치게 많은 물량의 거래를 요구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현재 바이어들 대부분이 현금결제를 하고 있음

러시아

- 러시아의 수입관리제도는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상품표시의무 등의 비관세조치로 구분
 -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가 가장 중요한 수입관리제도로써, 수입허가, 수입쿼터, 수입금지 등과 함께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이자 국가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됨
 - 또한 러시아는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기준의 안전증명, 검역규제, 상품표시규제 등의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대 러시아 수출국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직접적인 정책이나 규제 이외에도, 법률이나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고 통관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통관지연 문제가 자주 발생함
 - 국토가 넓고 세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 새로운 법령 실시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서류접수 3일내 통관을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각종 구실로 통관을 1~2개월까지 지연시키는 등 자의적 법적용 자주 발생
- 매장 입점비, 홍보비 또한 높은 시장진입비용 또한 장벽으로 작용
 -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지역은 제품의 매장 입점비가 매우 높고, 초기 마케팅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퇴출될 수 있어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스템
- 러시아의 다양한 제도 및 사회적 장치가 진입장벽으로 존재하지만 여러 수출국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진입

장벽에 대한 이해와 적응 필요

- 법률 및 제도의 변경은 현지 수입바이어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품질 증명서 등 필요한 인증 또한 바이어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 및 절차를 파악하되, 가능한 한 바이어가 러시아 현지에서 직접 인증을 받도록 유도
- 통관 시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보이스상 명기된 물품 내역이 거래계약서에 명기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고, 통관시 H.S. Code를 정확히 명기해야 함
- 초기 입점비용 또는 홍보비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후 관리비용을 수입자 또는 도소매 공급자가 부담하는 등의 조정 필요

대 만

■ 수입쿼터 제도에 의한 수입규제

- 대만은 WTO 회원국으로 현재 20개 품목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장 접근물량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운용하고 있음

■ 동·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규제

- 구제역 발병이후 수입 금지한 한국산 비가열 육류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계속시행
-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국으로 분류된 이후 닭, 오리고기 신선제품 수입금지 조치 계속시행
- 한국산 배 및 복숭아에 대하여 “한국산 복숭아 심식나방 기주 생과실 수입검역 작업요점” 으로 한국산 배 및 복숭아에 대한 수입제한

■ 고 관세율 및 기타비용 부과에 의한 간접규제

- 한국산 주요식품 수입관세가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
- 각종 부담금 징수(항만서비스비, 수입과징금, 환경보호기금, 기타비용 등)

■ 행정조치에 의한 규제

- 상품라벨, 수입가격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자율성 제한

■ 수출시 유의사항

- 중문라벨 규정 숙지
- 관세 및 수입금지, 보호품목 확인
- 신선제품 : 원산지 증명 / 검역서

태 국

가. 진입장벽 특징

- 태국의 진입장벽 특징은 자국 생산물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와 복잡하고 불투명한 조세행정, 임의적인 수입허가 및 검역위생조치 등임
 - 평균 최혜국 관세율은 11.4%이며, 농산품을 비롯 자국내 생산 주요 품목의 수입시 최고율 관세를 적용함
 - 이와 더불어 시장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물량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 불투명한 가격통제를 시행해 오고 있음
- 태국 관세청의 자유재량 권한과 투명성 결여도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며 관세청의 부패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나. 주요 진입장벽

- 법률 및 규제
 - 공중보건부 산하에 FDA를 두고 건강식품, 가정용 위험 물질의 사전 통제, 시판 후 모니터링, 건강식품 감독 및 소비 행동, 공교육 및 정보 서비스 관련 조항,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품질 향상 등을 관장
 - 시장 진입 전 제조허가를 위한 FDA의 식물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함.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 허가를 위한 FDA의 저장공간 및 창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함

- FDA는 식료품의 식품 등록, 라벨링 승인, 광고 승인들을 요구함. 시장 진입 후에는 시중의 식품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고, 안전성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 감시 청원 감찰이 실시
- 관세할당
 - 용안, 코코넛 과육, 우유, 버터, 감자, 양파, 마늘, 차, 건고추, 옥수수, 쌀, 콩, 양파씨, 콩기름, 콩깻묵(bean cake), 사탕수수, 야자유, 팜유, 인스턴트 커피, 담배, 실크 등 23가지의 농산물에 쿼터를 적용
- 수입제한
 - 모든 가공식품은 식품 수입등록 신청서에 자세한 성분표와 제조과정 설명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
 - 식품 수입허가는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많은 수입 식료품이 다수의 화학첨가물 테스트 및 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 표준, 테스트, 라벨링 및 인증
 -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은 FDA의 표준, 테스트, 라벨링, 인증 대상으로, 가공 식품은 자세한 성분표와 제조과정 설명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신청자의 영업 비밀을 누출시킬 위험이 있음
- 비관세 장벽 및 수입 허가
 - 최근에는 의약품과 농산물 비롯한 26개 이상의 범주에서 허가가 요구됨. 허가 신청서에는 공급자의 주문서류, 구매확정서류, 송장 및 기타 적절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일부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외의 품목의 경우 기타 수수료 및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하여 담당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는 다양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복잡함. 게다가, 많은 제품들이 기타 법률 하의 수입 규제에 따라야 함. 예를 들어 가공 식품, 의료 용구, 의약품, 화학 제품, 비타민 및 화장품은 공중 보건부 산하의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태국 정부는 약, 음향 녹음물, 우유, 탄산음료, 연료유, 화학 비료를 포함하는 20개 품목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가격 통제 검토 절차는 투명하지 않음. 가격 통제 결정은 때때로 시대에 뒤떨어진 가정(예: 환율)에 근거한 것일 수 있고, 관련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검토 없이 장기간 추진되기도 함
- 수입 규정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모순되게 적용됨. 서류업무 및 절차가 과도하고 통관과 기타 수입규제 기관간 협력이 부족하며, 현대적으로 전산화된 절차가 부족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작은 영토의 자유무역 도시로 자국에서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성 검증에 대해 상당히 민감함. 식품 수입 허가를 위해 사전에 승인이 되어 있는 국가의 식품 이외에는 철저한 샘플 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품목에 한해서 수입허가를 내주고 있음

■ 농산물 수출 진입장벽

- 신선과일과 채소는 'Control of Plants Rules'을 통해 생산지에서 도착지 까지 안전한 식품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수입 농산물을 규제 하고 있음. 수입 결정여부는 식품안전요건에 따른 잔류농약과 기타 유독성 물질의 기준치 초과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FAO/WHO의 국제식품 규격위원회의 규정을 준수

■ 육류 및 수산물 수출 진입장벽

- 육류 및 수산물 제품은 철저한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에 감염된 육류 및 수산물의 도입을 막음으로써 안전한 제품 수출입을 목적으로 함. 'CAP 349A'라는 법령을 통해 수출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비자 보호하고 있음

■ 가공식품 수출 진입장벽

- 가공식품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방법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샘플검사 시 소요비용 과다발생 등이 비관세장벽임. 또한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의 수입은 2005년 9월경부터 금지되었으며 아직도 금지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임

■ 건강식품의 수출 진입장벽

- 현지 인삼수입업체에 의하면, 수입면허 취득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어렵고 까다로워 비관세장벽으로 느낌. 검사보고서의 경우, 싱가포르 보건당국에서 미국 FDA의 평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지만, 한국 연구소가 인증한 서류는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높으며, 성분보고서 작성 시 주원료만 기재하고 기타 원료에 대해서는 '기타 (Others)'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기타 재료도 필히 100% 작성해야 함
- 이에 따라, 한국수출업체의 서류준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수입업체에서는 세부사항까지도 지도를 해야 하는 입장임. 수입면허 취득 시, 최소 2개월이 소요되지만 서류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 및 재제출로 인해 6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어 건강식품 수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필리핀

가. 진입장벽 특징

- 자국 농식품의 원활한 유통과 농민들의 일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엄격히 제재
- 세관 및 식약청 실무자들의 부패 및 비리가 심함
- 법률 혹은 규제 변경 시 변경 안내공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수입업자들에게 수입에 대한 절차나 기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제공기관이나 업체가 매우 적음
- 외국인 수입업자들에 대한 현지 정부기관들의 제재가 많음
- 외국인 수입업자들의 수입 경로 및 기타 규제 사항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짐
- 관세책(Tariff Book)의 업데이트가 늦으며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수입업자들이 Tariff Book 보유에 어려움이 있음

나. 주요 진입장벽

- 접근 용이한 국가기관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 매우 적음
- 법률 변경 시 공지가 매우 느리거나 공지를 하지 않음
- 국가기관 세관이나 식약청 직원들의 안이한 업무 처리
- 한국 제품들의 한문 표기로 중국제품으로 오인 통관 지연 사태 발생 (중국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더욱 강화)

- 한국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납품하는 업체의 증명서 요구
- 필리핀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생산되는 농식품은 수입 금지나 혹은 수입 제한
 - 해당품목 생산시기에는 수입금지, 그 외 기간에는 수입 허용 등
- 가격 제한 조치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다른 법률의 강도는 높지 않음
- 품질 규제 및 품질 인증은 해당 국가의 식약청이나 검역소의 보증 및 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
- 한국 정부의 식약청과 검역소에 대한 신뢰도는 높음
- 라벨링의 경우 멜라민 파동 전에는 라벨링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현재 라벨링은 모두 영어나 타갈로그어 라벨링이 필수임

베트남

- 베트남에 수출하고자 하는 농식품은 식약청 식품안전국에서 The Certificate of Standard for Product를 발급 받아야 함
 - 제품등록시 등록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등록비 외에 뇌물로 품목당 미화 50달러 내지 1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해결하는 수입업자가 많음
 - 등록은 한번 등록하고 나면 3년간 유효하고, 3년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함
- 베트남은 시장의 모든 제품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단속요원이 있는데, 통관에 문제가 있는 제품, 위생상에 문제가 있는 제품, 유통기간, 원산지 표기나 제품기준설명이 베트남어로 되어있지 않는 제품 등에 대해서 시장을 단속하고 관리함
 - 그러나 이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며, 수시 단속으로 수입식품 판매상들은 과외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장관리 외에 경제분야를 담당, 관리, 단속하는 경제경찰이 있음
 - 경제경찰의 역할은 시장관리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단속하는 과정이 거의 유사하며, 처벌기준은 매우 강해 이중고로 작용
- 식품의 경우 컨테이너가 항만에 도착하면 베트남의 더운 날씨에 장기간 항만에 적재되어 있을 경우 식품의 변질이 우려되어 신속히 통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세관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통관이 순조로워지며, 이러한 것들이 수입자에게 비용부담으로 전가됨
-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관세부담률이 높으며, 높은 관세율로 인해 판매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시장 위축에 영향을 끼침

E U

- EU의 비관세장벽들은 관세나 쿼터제와 같은 수입정책보다는 수입검사, 품질규제, 상품표시, 포장 등과 같은 법규적인 제한, 그리고 EU 소비자들의 높아지는 환경, 사회,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강조하는 비법규적 시장 요구조건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 EU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식물, 동물, 식품의 위생, 수의학적 안전도, 농약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며 검역의 대상은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 반가공 상품,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유기농에 대한 법률과 시장의 요구조건인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음
- 포장, 포장 폐기물, 그리고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EU는 회원국의 식물들의 보호과 동시에 품질, 환경에 대한 요구조건을 EU로의 수출업체에게 요구하고 있음
- EU 소비자들과 산업체들은 제품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민감하며,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식품위기와 같은 큰 재앙들은 더 많은 규정과 그리고 대중의 신뢰를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동기를 유발하고 있음
- EU의 수입업자들은 EU로의 수출업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요구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임금과 최대노동시간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건들과 직원들의 보건과 위생에 윤리적 기준의 적용을 의미함

- EU에 수출되는 제품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EU는 생산업체들에게 EU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적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품질, 사회, 윤리, 환경적 요구사항들 외에 EU는 수입금지 및 제한, EU내의 농민들의 생계 후원과 같은 가격 지원책, 진입가격 체계와 같은 수입정책들로 EU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산 농식품의 EU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유형 및 품목별 사례를 분석하고 EU가 제시하는 법률들과 시장이 요구하는 요구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하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활로를 개척하는 길임